



No. 77

IIRI Online Series

최근의 국제동향과 전략물자 관리

이 은 호

전략물자관리원장

2020. 11. 4

최근의 국제동향과 전략물자 관리



이 은 호 | 전략물자관리원장

‘전략물자’는 일반적으로 재래식 무기 또는 대량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와 이를 운반하는 수단인 미사일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에 이용 가능한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로 정의된다. 이들을 통제하려는 노력은 국제사회에서 계속 있었으나, 최근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할 이유가 다음 세 분야에서 부상하고 있다.

첫 번째는 대량살상무기 기술들의 확산과 사용 확대이다. 지난 10월 평양 열병식의 신형 무기들은 차치하더라도,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시리아 및 예멘에서는 군사용 및 민수용 드론, 크루즈 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들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신경가스를 포함한 화학무기들도 여기저기에서 종종 뿌려지고 있다.

두 번째 이유는 미국의 화웨이 제재와 같이 수출통제제도가 정책의 수단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¹⁾ 중국도 금년 12월에 수출관리법을 시행할 예정이라서 주요 국가의 통제제도를 잘 파악하고 제대로 대응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세 번째로는,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상황이 가져오는 새로운 도전이 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첨단물자와 기술을 신속

1) 중국이 기술적 우위를 갖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국가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Robert A. Manning, "The U.S. Finally Has a Sputnik Moment With China," *Foreign Policy* (2020.10.29.)

히 교역하면서도 적절하게 전략물자 통제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 기업이 알아야 할 수출통제제도는 크게 국제적 제도와 특정 국가 주도 제도로 나뉜다. 국제적 제도를 살펴보면, 대량살상무기 분야에서는 핵확산금지조약(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등의 협정, 국제원자력기구(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등 유엔(UN) 기구, 그리고 통칭 4대 체제라고 부르는 자발적 통제기구²⁾들이 있다. 특히 UN은 비국가 테러단체를 포괄하는 안보리 결의 1540을 2004년에 채택했으며 제재대상자를 우려거래대상자 목록(Denial List)에 등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산 첨단기술이나 부품이 필수적인 산업 분야에서는 미국 정부의 독자적 통제체제가 더 중요할 수 있다. 미국의 수출통제는 주로 상무부³⁾와 재무부⁴⁾가 각각 발표하는 ‘수출통제기업 리스트(EL: Entity List)’ 및 ‘특별 제재대상(SDN: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현재 이 목록에 등재된 개인과 단체는 1만여 개가 넘는다. EL 기업에게 수출관리규정(EAR: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에서 규정한 미국산 제품을 수출 또는 재수출하려면 상무부 산업보안국(BIS: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국산 제품이라도 미국산 부품 비율이 25% 이상이거나 미국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생산되었다면 사전승인 대상이다. SDN은 재무부가 작성하며, 미국인이나 기업에 대해 등재 인물 및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한다. 미국의 수출통제가 큰 힘을 발휘하는 이유는 외국인 처벌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제재대상과 거래한 제3국의 개인·법인·금융기관 등에 2차 제재(secondary boycott)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의 최대 교역대상국인 중국의 제도 또한 중요하다. 중국은 4대 국제체제와 유사한 수출통제체제를 운영해왔으나 2020년 10월 17일 전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수출관리법을 채택하여 독자체제도 갖게 되었다. 12월 1일 시행 예정이며, 수출통제품목과 우려거래자 목록을 운영하

2) 핵공급그룹(NSG: Nuclear Suppliers Group),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Australia Group) 및 바세나르체제(WA: Wassenaar Arrangement).

3) BIS(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가 관리.

4) OFAC(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이 관리.

고 위법한 개인이나 단체를 외국인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고 있다. 집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중국 수출관리법도 미국 제도와 유사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전략물자의 통제는 품목에 따라 대외무역법, 방위사업법, 원자력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대한 법률이 있고, 산업부, 방사청,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통일부가 담당한다. 전략물자관리원과 원자력통제기술원은 전략물자 판정과 기술검토 등을 지원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조약 및 국제기구 외에 4대 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하여 활동 중이다. (참고로 2020년 현재 4대 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는 총 29개국이고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 2개국뿐이다.)

최근 전략물자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 대응하여 전략물자관리원은 인력과 예산을 대폭 보강하였으며, 수출통제와 관련된 기존 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정부의 전략물자관리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우리 기업이 쉽고, 편하며 안전하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 또한, 국내 전문가들과의 협업 네트워크도 보강하여 기술검토 및 정책 연구 기능을 활성화하려 한다.

/끝/

저자 소개

이은호 원장은 미국 조지아 공대에서 기계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전략물자관리원 원장으로 재직중이다. 학위 취득 후 드론, 자동화 등의 분야에서 연구활동을 한 후 공직을 시작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국제표준과장, 전자상거래과장, 동북아통상과장 및 포항지열발전조사지원단장 등을 역임하였다. 또한, 대통령실 선임행정관과 베트남 상무관 및 UAE 경제공사참사관으로 근무하였으며, 일본, 싱가포르 등 다수 국가와의 FTA 협상에 분과장으로 참여하고, ISO에서 이사, 개도국 작업반 의장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세상을 지배하는 표준이야기 - 글로벌 표준전쟁의 최전선에서」(2012)가 있다.

(Email: eunho.lee@kosti.or.kr)